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연 월 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건축물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 사용 또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각 재료에 대해 성능기준을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복합자재 및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실험 성능시험을 통해 추가로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판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자재 심재 등 화재안전성능 규제(안 제24조제5항, 제7항 및 제8항)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를 사용하거나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각 재료에 대해서 난연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

나. 복합자재 등 실험 성능시험 도입(안 제24조제8항 및 제9항)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와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험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평가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험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만족할 것

2. 강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 두께: 0.5밀리미터 이상일 것[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나. 앞면 도장 횟수: 2회 이상일 것

다.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0\text{g}/\text{m}^2$ 이상일 것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text{g}/\text{m}^2$ 이상일 것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text{g}/\text{m}^2$ 이상일 것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90\text{g}/\text{m}^2$ 이상일 것

5) 그 밖의 도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심재: 강판을 제거한 심재가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그라스올 보온판, 미네랄 울 보온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인 것

⑨ 제5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가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험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만족할 것

2. 각 재료에 대해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마감재료) 영 제61
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
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숙소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
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
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해당하는 경우

⑥ (생략)

⑦ 영 제6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 다만,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를 단열재로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⑥ (현행과 같음)

⑦ -----

--. <단서 삭제>

⑧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험 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만족할 것

2. 강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 두께: 0.5밀리미터 이상일

것[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나. 앞면 도장 횟수: 2회 이상
일 것

다.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
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
나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산업표준
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
준에 따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
0g/m² 이상일 것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
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
0g/m² 이상일 것

3) 용융 55% 알루미늄 아
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m² 이상일 것

4) 용융 55% 알루미늄 아
연 합금 도금 강판: 90g/
m² 이상일 것

5) 그 밖의 도금: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심재: 강판을 제거한 심재가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

<신 설>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
물의 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1
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

나에 해당할 것

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 그라스울 보
온판, 미네랄울 보온판으
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
합한 것

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
료인 것

⑨ 제5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가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에 따라 실험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만족할
것

2. 각 재료에 대해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제24조의2(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
과 인접한 건축물의 마감재료)
영 제61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③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자재의 강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강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 것
- 가. 두께: 0.5밀리미터 이상일 것[도금 이후 도장(塗裝)

-----.

<삭 제>

<삭 제>

전 두께를 말한다]

나. 앞면 도장 횟수: 2회 이상

일 것

다.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

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

나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산업표준

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

준에 따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

0g/m² 이상일 것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

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

0g/m² 이상일 것

3) 용융 55% 알루미늄 아

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m² 이상일 것

4) 용융 55% 알루미늄 아

연 합금 도금 강판: 90g/

m² 이상일 것

5) 그 밖의 도금: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심재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

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

인 것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

재로서 보온판 2중2호 이

상인 것

다.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

료인 것